수원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나871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수원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나8719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782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오남성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찬욱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12.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78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관련 C의 소외 D에 대한 60,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20. 8. 2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D[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9. 1. 접수 제40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 감정인 Q의 감정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12행의 “이 사건 부동산(그 시가는 C이 매수하였던 때부터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26,897,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증여계약 당시 C의 R 주식계좌의 잔고를 고려하면 C이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R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다가 위 주식계좌 잔고의 실제 가치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21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그러나”를 “살피건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23. 12. 20. C을 강제집행면탈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세리, 판사 허서윤, 판사 여인지